

---

# 『태국, 자동차 및 전기차의 라벨 규제 제품 지정 결정에 대한 라벨 위원회의 통보 초안』

## 심층분석 보고서

---

2025. 04.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03, 8704
통보국	태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15,375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 목 차 ]

1. 규제 개요 .....	1
2. 제정 세부내용 .....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	5

## 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5.04.03.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전기차를 라벨 관리 대상 상품으로 지정하는 통보문을 발표함
- (규제요지) 자동차 및 전기차의 라벨 표시 사항 및 상품 자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라벨 표시 방식을 규정함

TBT 통보번호	■ THA/772	통보일	■ '25.04.03.	
		고시일	■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및 전기차의 라벨 규제 제품 지정 결정에 대한 라벨 위원회의 통보 초안</li> <li>■ Draft Notification of the Committee on Labels, RE: Determination of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as Label-Controlled Products</li> </ul>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보호위원회</li> <li>■ Off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OCPB)</li> </ul>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정보 제공, 라벨링 (Consumer information, labelling)</li> <li>■ 기만적 관행방지 및 소비자보호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li> <li>■ 인간의 건강 및 안전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li> </ul>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정 초안</li> </ul>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결정</li> </ul>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5.03.</li> </ul>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li> </ul>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ul>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동차 및 전기차</li><li>■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li></ul>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동차) 자동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직 등록되지 않은, 개인용 승용차 또는 개인용 화물차로서 엔진으로 움직이는 차량</li><li>■ (전기차) 자동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직 등록되지 않은, 개인용 승용차 또는 개인용 화물차로서 전기 동력 또는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차량</li><li>■ (적용 제외)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태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li></ul>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5,375</li></ul>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8703, 8704</li></ul>

## 2

## 제정 세부내용

## □ 제정 세부내용

- (제2조) 자동차 및 전기차를 라벨 관리 대상 상품으로 지정함
- (제3조) 라벨 관리 대상인 상품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표시하도록 규정함

[표 1] 제정 세부 내용

구분	제정 초안
제3조	<p>제2조에 따라 라벨 관리 대상인 상품은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표시하여야 함</p> <p>표시 방법은 상황에 따라 <u>문자, 이미지, 도형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u>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됨. 해당 <u>라벨은 태국어 또는 태국어와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u>, 표시 내용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함. 이와 관련된 기준은 제4조를 따름</p> <p>단,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태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상품의 라벨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p>

- (제4조) 라벨 표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표 2] 제정 세부 내용

구분	제정 초안
제4조	<p><u>(1) 상품의 유형 또는 종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u></p> <p><u>(2) 태국에 등록된 제조업자의 상호 또는 상표 (태국 내 판매용)</u></p> <p><u>(3) 태국에 등록된 수입업자의 상호 또는 상표 (태국 내 판매용)</u></p> <p><u>(4) 수입품일 경우 제조국 명시</u></p> <p><u>(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주소</u></p> <p><u>(6) 상품의 크기 또는 치수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 사용 가능)</u></p> <p><u>(7) 상품의 중량 (단위 표시 동일 적용)</u></p> <p><u>(8) 개인용 화물차의 경우 적재 하중</u></p> <p><u>(9) 제품 세부 사항: 차량 브랜드, 엔진 브랜드, 모델명</u></p> <p><u>(10) 기어 및 구동 방식</u></p> <p><u>(11) 연료 종류, 엔진 크기 및 용량</u></p> <p><u>(12) 품질 보증 기간 및 조건 (보증 없을 시 '없음' 표기)</u></p> <p><u>(13) 사용 방법 (소비자가 제품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u></p> <p><u>(14) 사용 또는 관리 방법 (예: 사용 전 장비 점검, 매뉴얼 확인 등)</u></p>

<u>(15) 주의 사항 (예: 경사로 운행 시 주의 등)</u>
<u>(16) 경고 문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장애 위험이 있음' 등의 안전 문구</u>
<u>(17) 제15항과 제16항은 다른 글자보다 크고 대비 색상으로, 쉽게 볼 수 있어야 함</u>
<u>(18) 제조일자: 불명확할 경우 주/월 + 연도로 표시 가능 (태국력 또는 서력 모두 가능)</u>
<u>(19) 가격 (단위: 바트, 외화 병기 가능)</u>
<u>(20) 전기자동차의 경우, 위 항목 외에 아래 추가사항 포함</u>
<u>(a) 전기차 유형: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배터리식(BEV), 수소 연료전지(FCEV) 등</u>
<u>(b) 전기모터 출력 (단위 자유)</u>
<u>(c) 구동용 배터리 종류</u>
<u>(d) 배터리 보증 조건 ('없음' 명시 가능)</u>
<u>(e) 배터리 용량</u>
<u>(f) 충전 시간 및 조건 (해당 시)</u>
<u>(g)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해당 시)</u>
<u>(h) 전기 구동 시스템의 안전 표준 정보 (예: TIS 3026, UN Regulation No.100 등, 해당 시)</u>
<u>(i) 전력 소비량</u>
(9)항의 표시에서 차량 브랜드, 엔진 브랜드 및 모델명 부분에 한해서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음
(18)항의 표시에서는 일-월-년 순으로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월은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고, 연도는 불기(월.) 또는 서기(월.)로 표기할 수 있음 날짜(일, 월, 연)의 순서가 이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해당 날짜 형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문구나 문자를 함께 기재해야 함. 상품 라벨에 표시되는 모든 문구는 뚜렷하게 보이고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글자의 크기는 라벨 면적과 비례해야 하고, 글자 높이는 최소 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함

- (제5조) 라벨이 표시되어야 할 상품에 대해 상품 자체에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라벨 표시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표 3] 제정 세부 내용

구분	제정 초안
제5조	<p>라벨이 표시되어야 할 상품에 대해 제 3 조 및 제 4 조에서 명시된 대로 하나의 위치에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상품 자체에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자, 도형, 도안 또는 이미지 중 하나 이상을 상품, 포장 용기, 또는 상품을 포장한 상자 중의 일부 위치에 표시하거나, 해당 상품 또는 포장 용기나 상자에 삽입하거나 포함 시켜 표시하거나,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서류 또는 설명서, 또는 상품이나 포장 용기에 부착되거나 표시된 태그(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음</p> <p>단, 라벨의 모든 정보가 다양한 위치에 나뉘어 표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전체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함 (기존 내용 유지)</p>

관련 법령 및 표준

- 법령
  - 소비자보호법 B.E.2522 (1979)
  - 소비자보호법 제2차 개정법 B.E.2541(1998)